

연명의료결정제도 FAQ

등록기관용

또 다른 삶의 준비, 연명의료결정제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생애말기 무의미한 연명의료종단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조]

이 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인의 의사를 사전에 남겨놓을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로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건강한 성인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작성합니다.
 - 2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담당의사가 환자와 상담을 통해 작성합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이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대상	19세 이상의 성인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작성	본인이 직접	환자의 요청에 의해 담당의사가 작성
설명 의무	상담사	담당의사
등록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등록된 의료기관



미리 준비하는 삶의 마무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은?



등록기관 방문

작성을 희망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작성

>>



본인확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 지참 후
기관 내에서 본인 확인

>>



상담 및 작성

1:1 상담을 통해
6가지 관련 사항 숙지 후,
안내에 따라 작성

>>



등록 및 효력* 발생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등록 후 법적효력 발생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될 때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을 거쳐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위한 시설, 인력 등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노인복지관 또는 공공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역할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에
관한 업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
및 작성 지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상담,
정보제공 및 홍보



관리기관에 대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변경·철회 등의
결과 통보



그 밖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할 수 있는 등록기관은 어디있나요?



등록기관 검색 QR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좌측 QR코드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정보포털(www.lst.go.kr)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6.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설명 사항은?

연명의료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임종기간을 연장하는 연명의료 시술(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당상승제 투여 등)에 대하여 유보(시행하지 않는 것)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 선택 및 이용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향을 미리 밝혀둘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란? 호스피스 대상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및 관리 조회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통보되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관리합니다. 등록기관 직접 방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www.lst.go.kr),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변경 및 철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후 언제든지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철회 가능합니다.)
등록기관 폐업/휴업	등록기관이 폐업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의 모든 기록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이관됩니다. (다만 휴업의 경우, 등록기관에 의사에 따라 관련 기록을 등록기관에서 직접 보관할 수 있습니다.)
가족열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가족열람을 허용한 경우 환자 가족은 기록열람신청서에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성 명 김건강(1959.11.29)

등록번호 R19-56789

등록일 2019.06.25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귀하에서 작성하신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www.lst.go.kr) 등록되었습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검색 QR코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대표번호 1855-0075
수신자무담 1422-25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신청하시면 우편으로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효력은 등록증 발급·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합니다.

모바일 등록증도 발급 가능하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I	연명의료결정제도(법률)의 이해	01
II	등록기관 운영	17
III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지원	31
IV	등록카드 발급	53
V	기록물관리	61
VI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67
VII	교육신청	73
VIII	부록	77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법정서식(제6호 서식)	78
	2. 모바일등록증 발급 신청 및 방법 안내	80





연명의료결정제도(법률)의 이해

Q 01

사망하는 모든 환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나요?

A_{nswer}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상황에서의 응급환자, 집에서 사망하는 환자 등은 연명의료결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고자 하는 환자가 아니라면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른 일반적인 원칙을 따르면 됩니다.

Q 02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언제, 어떻게 이용되나요?

Answer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자가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본인의 의사표현으로써 효력을 발휘합니다.

등록(통보)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향후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 받는 시점에 담당의사로부터 조회 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 담당의사는 해당 환자에게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대한 의사가 동일한 지 확인하여, 동일한 경우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합니다.

환자의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다음을 함께 확인해야 환자의 의사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① 의향서 내용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의사 능력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
- ②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의향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다는 사실

Q 0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해 두었는데,
추후 담당의사가 다시 확인하는 이유는 뭔가요?

Answer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자가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본인의 의사 표현입니다.

하지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자가 자신의 질병 상태와 치료 방법을 충분히 알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의사를 표현한 것이 아니므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받은 상태에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작성자의 의향이 동일한지에 대하여 담당의사가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의향이 동일한 경우 담당의사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 의사 확인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합니다.

Q 0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모든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을 할 수 있나요?

A_{nswer}

그렇지 않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즉,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등록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아래의 QR 코드를 통해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 및 등록된 의료기관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Q 05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요?

A_{nswer}

상담을 통하여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 되는 순간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거나, 본인의 의사가 아닌 경우 작성된 서식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Q 06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언제까지 연명의료정보처리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나요?

A_{nswer}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통보)된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완료 이후 일주일 이내에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통보)하여야 합니다.

Q 07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전에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유사한 서식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같은 효력이 있나요?

A_{nswer}

그렇지 않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2018.2.4.) 이전에 작성된 유사 서식(사전의료지시서, 사전의료의향서)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등록기관이 아닌 곳에서 작성된 유사 서식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서식들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쓰지 않은 환자가 향후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연명의료 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 의사에 대해 가족이 진술 할 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Q 08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환자의 경우, 보험금 청구 시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A^{nswer}

그렇지 않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37조에 따라,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사망한 사람과 보험금 수령인 또는 연금 수급자에게 보험금 또는 연금 급여 지급 시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안 됩니다.

Q 09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는 같은 것인가요?

A_{nswer}

그렇지 않습니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 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그 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입니다.

호스피스란 말기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루어진 호스피스완화 의료전문팀이 호스피스 대상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말합니다.

Q 10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시 작성자가 호스피스 이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여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추후 호스피스 대상 환자가 되어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을 하기 위해서는 서식을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A_{nswer}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호스피스 이용 여부는 결정이 아닌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하여 단순한 의향을 밝히는 것입니다.**

추후 호스피스대상 환자가 되어 호스피스 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 하고자 하는 경우 「연명의료결정법」 제28조에 따른 별도의 호스피스 이용동의서(전자문서로 된 동의서를 포함한다)와 의사가 발급하는 호스피스대상 환자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전자문서로 된 소견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호스피스 병동 입원을 위하여 이용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Q 11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영양공급도 중단하는 건가요?

Answer

그렇지 않습니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에 있어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해서는 안됩니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을 한 이후에도 담당 의사는 이행에 따른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환자에게 편안한 임종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Q 1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이 만약 갑작스런 사고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응급실에 이송 될 경우, 호흡곤란으로 인공호흡기가 필요하거나 심정지가 왔을 때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는 건가요?

A_{nswer}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응급환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응급의료법, 의료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응급의료법 등에 따라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상태가 회복되지 않거나 치료 과정에서 질병의 상태가 악화되어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에 의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게 되면(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그 이후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여부 및 환자 의사 등을 확인하여 연명의료 중단등결정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Q 13

부모님께서 연로하시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을 작성하기 어려우신데, 그럼 연명의료 중단을 할 수 없는 건가요?

Answer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평소에 연명의료를 시행 하지 않거나 중단할 것을 원하는 등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를 표현했었다면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의사를 환자가족 2인의 진술을 통해 확인하고, 이를 통해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이 가능합니다.

즉,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았고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것을 원하는 등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로 보기에 충분한 기간동안 일관하여 표시된 환자의 의사를 환자가족 중 2인 이상이 진술하고, 이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확인하는 경우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환자가족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 ① 배우자와 직계 존속 및 직계 비속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없는 경우
- ② 형제 자매가 포함됨
- ✔ 환자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환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확인 가능함

Q 14

가족이 없는 환자도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나요?

A_{answer}

네 가능합니다.

가족이 없는 경우라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통해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없고, 의식도 없는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등록기관 운영

Q 15

등록기관으로 지정 신청을 하고 싶은데, 별도의 신청 자격이 있나요?

A_{answer}

네 그렇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상담·작성지원 및 등록·관리 등에 관한 등록기관 업무를 수행 하고자 하는 기관은 「연명의료결정법」 제11조,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등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등록기관 지정 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 ②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
- ③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 단체를 말한다)
-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⑤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등 요건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하 “등록 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2. 의료기관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Q 16

등록기관 지정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소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담 부서와 2명 이상의 전담 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담실 및 사무실, 업무처리 설비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반기 별 공고 기간 중 신청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고시에 따라 지정 요건 확인 및 검토 절차를 통해 등록기관 업무 수행 가능 여부 등의 종합적인 판단 후 등록기관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 전담 부서 및 전담 인력은 겸직이 가능하며, 전담 인력의 경우 4대보험 가입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제8조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 및 상담실을 갖추는 것
2. 소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온라인 업무처리시스템을 갖추는 것
3. 소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2명 이상의 인력을 갖추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내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Q 17

등록기관의 기관정보가 변경되었어요.
별도의 신고 절차가 있나요?

A_{nswer}

네 그렇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등록기관의 지정 요건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변경 사항에 대해 관리기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별지 제2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 등록기관 기관 정보 변경 신고 절차 방법

- 1)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intra.lst.go.kr)을 통한 변경 신청 등록
(등록기관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2)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신청 서류 검토
- 3) 보건복지부 최종 서류 검토 및 승인

Q 18

등록기관의 사정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 지원 등 등록기관 업무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등록기관이 1개월 이상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 등록기관 휴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등록기관은 **별지 제4호 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폐업, 휴업, 운영 재개) 신고서**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intra.lst.go.kr)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휴업 예정일의 1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Q 19

등록기관 휴업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nswer

등록기관이 1개월 이상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휴업 예정일의 1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등록기관은 **별지 제4호 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폐업, 휴업, 운영 재개) 신고서**에 다음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연명의료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관련 기록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하는 경우

: 기록 이관에 관한 조치계획서 첨부

➡ 기록 이관은 휴업 예정일 3일 전까지 이관하여야 함

2) 관련 기록을 직접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 **별지 제5호 서식 관련 기록 직접 보관 허가 신청서 작성**

➡ 관련 기록에 대한 전체 목록, 관련 기록에 대한 보관계획서 함께 제출

✔ 위반 시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43조제3항제1호)

참고 등록기관 휴업 신고 방법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intra.lst.go.kr) 로그인 ⇒ 업무메뉴 '기관 정보관리' ⇒ '휴업·폐업·운영 재개 신고' ⇒ '휴업을 신고하는 경우' 체크 ⇒ 해당 서류 첨부 ⇒ [신고]

Q 20

등록기관 휴업 기간이 끝나면 별도의 절차 없이 기존대로 다시 운영하면 되나요?

Answer

그렇지 않습니다.

등록기관이 휴업 후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

운영 재개 예정일의 1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등록기관은 **별지 제4호 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폐업, 휴업, 운영 재개) 신고서**를 작성하고, 등록기관 지정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반 시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43조제3항제1호)

참고 등록기관 운영 재개 신고 방법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intra.lst.go.kr) 로그인 ⇒ 업무메뉴 ‘기관 정보관리’ ⇒ ‘휴업·폐업·운영 재개 신고’ ⇒ ‘운영 재개를 신고하는 경우’ 체크 ⇒ 해당 서류 첨부 ⇒ [신고]

Q 21

등록기관 폐업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_nswer

등록기관이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 예정일의 1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등록기관은 **별지 제4호 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폐업, 휴업, 운영 재개) 신고서**에 다음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연명의료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폐업 시에는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 기록 이관에 관한 조치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관련 기록의 이관은 폐업 예정일 3일 전까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장에게 반드시 이관하여야 합니다.**

✔ 위반 시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43조제3항제1호)

참고 등록기관 폐업신청 방법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intra.lst.go.kr) 로그인 ⇒ 업무메뉴 '기관 정보관리' ⇒ '휴업·폐업·운영 재개 신고' ⇒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체크 ⇒ 해당 서류 첨부 ⇒ [신고]

Q 2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은 등록기관에서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나요?

A_{nswer}

작성 및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등록기관이 휴업·폐업 또는 지정 취소 전까지 영구 보관하여야 합니다.

원본스캔파일 입력방식인 종이 서식을 통해 작성하는 경우 등록기관 내 잠금장치가 설치된 문서보관설비에 서식 원본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 직접입력 방식으로 작성 시 서버 내 저장 공간에 자동으로 보관 됨

Q 2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싶은데, 거동이 불편하여
등록기관 방문이 어렵다고 합니다. 출장 방문 상담도
가능한가요?

Answer

네 그렇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등록기관으로 직접 방문할 수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등록 기관의 장은 작성자가 있는 곳으로 상담자를 파견하여, 상담 및 작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가정방문 등의 출장 방문 상담 전, 먼저 작성 희망자의 의사소통 가능 여부, 인지능력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방문 요청 사유 파악, 동거 가족 여부 등 가정 방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 한 이후, 반드시 상담자는 2인 1조로 동행하도록 하며, 작성자의 자택에도 가족이나 지인, 요양보호사등 동석이 필요함을 안내해야 합니다.

단, 출장방문 상담은 등록기관의 관리자(담당자)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접수된 방문 요청 건에 대해서만 상담 및 작성이 가능하며, 등록기관의 관리자(담당자)는 출장 방문 상담에 대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 출장 방문 요청 시, 출장 방문 상담 주요 점검 사항을 반드시 전화로 사전 확인 필요

Q 2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안내·홍보할 수 있는 리플릿 또는 설명 자료 등이 있나요?

A_{nswer}

네 그렇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는 등록기관 대상 리플릿, 포스터, 브로슈어 등의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등록기관 대상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책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표준운영지침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정보포털(www.lst.go.kr) 자료실을 통해 관련 홍보자료 및 영상 자료를 이용 및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홍보자료 확인 방법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정보포털(www.lst.go.kr) ⇒ ‘자료실’ 또는 ‘영상 자료실’

Q 25

연명의료결정제도 홍보물을 추가로 받고 싶은데 추가로 요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A_{nswer}

네 가능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리플릿, 포스터 등 홍보물 추가 요청이 필요한 경우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intra.lst.go.kr)을 통해 추가 배포 요청 신청이 가능 합니다.

단, 배포 수량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으므로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수량을 신청하시면, 홍보물 관리 담당자가 확인 후 배포 가능 수량을 확인하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 홍보물 추가 요청 방법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intra.lst.go.kr) 로그인 ⇒ 업무메뉴 ‘커뮤니티’
⇒ 1:1문의

- 상담분류 : 홍보문의(홍보물 추가요청 등)으로 분류
- 내용 : 기관명, 수령주소, 담당자 성함, 연락처, 요청 홍보물 및
요청 수량 작성

Q 26

등록기관 홍보를 위해 관리기관 자료실에 있는 포스터 및 리플릿 시안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때 리플릿을 편집 및 활용하여 사용해도 되나요?

A_{nswer}

네 가능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제작한 리플릿을 편집 및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리플릿 페이지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안내’ 페이지에 한하여 등록기관 약도, 로고 등을 삽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연명의료결정제도 홍보물(리플릿, 포스터등) 관련 FAQ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정보포털(www.lst.go.kr) ⇒ ‘공지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지원

Q 27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본인만 작성이 가능한가요?

Answer

네 그렇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19세 이상 성인이 등록기관 소속 상담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 형제, 자녀 등 가족이 대신하여 의향서를 작성할 수 없으며, **반드시 작성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본인이 직접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범위

- ① 주민등록증 ② 운전면허증 ③ 대한민국여권
- ④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⑤ 「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 ✓ 대한민국여권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구여권만 가능
- ✓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은 모바일 신분증 가능

Q 28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아 신분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본인 확인 방법으로 신분증 사본도 인정되나요?

A_{nswer}

네 그렇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전 신분증 확인은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사진 등을 확인하여 작성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사본도 가능합니다.

또한, 신분증을 찍어둔 사진(이미지)도 작성자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Q 29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려면 비용이 발생 하나요?
또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있나요?

A_{nswer}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데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의 의사를 밝힐 수 있는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작성이 가능합니다.

Q 30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서명이나 기명날인 외에
지장으로도 본인의 작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A_{nswer}

그렇지 않습니다.

작성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의향 확인 없이 타인이 물리력을 행사하여 대신 지장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위험 등을 고려하여 지장은 유효한 환자 본인 의사 확인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3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한 상담을 유선으로
진행한 후, 작성자가 집에서 작성하여 우편으로 등록
기관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_{nswer}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은 언제든지 유선으로 가능합니다.

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등록기관 소속 상담자와 상담을 통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작성자 본인 확인 및 설명 이해정도와 인지능력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상담자와 대면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Q 32

외국인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A_{answer}

네 그렇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외국인에 대한 별도의 제외나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외국인에게도 「연명의료결정법」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통해 확인된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 번호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Q 33

작성해 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해외에서 연명의료중단 시 적용이 가능한가요?

A_{nswer}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도 보건복지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등록한 의료기관에서만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 시 해당 국가의 법률이나 제도에 따라 별도의 서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Q 3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상담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경우라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을 위해 제3자인 상담자의 확인이 필요한가요?

A_{nswer}

네 그렇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3자의 확인을 통해 검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기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반드시 다른 상담자를 통해 상담 후 확인을 받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Q35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상담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 형제 등 가족과 지인들 대상으로 작성해도 되나요?

A_{answer}

네 가능합니다.

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자는 중립적으로 제도를 안내하여야 하며, 작성을 유도하거나 권유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특히 본인의 가족을 직접 상담하여 작성하려는 경우라면, 경제적인 문제나 부양부담 등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가족이 직접 상담하기 보다는 해당 등록기관 내의 다른 상담자의 상담을 받고 작성하시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Q 36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자 할 때 거주지 관할 지역의 등록기관에서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Answer

그렇지 않습니다.

작성자의 거주지 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은 모든 등록기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이 가능합니다.

단, 등록기관의 상황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가능 요일 및 시간, 운영 방침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등록기관 방문 전 반드시 미리 전화 확인 후 방문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정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정보포털(www.lst.go.kr)

- ‘등록기관 지역찾기’를 통해 전국에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 기관 검색하여 확인
- ✓ 시/도(전체) 또는 시/군/구 등 세부 검색 가능

Q 37

2019년 3월 28일 법 개정 시행으로 연명의료 시술의 종류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의향서를 작성한 사람들은 다시 등록기관을 방문해 추가된 시술에 대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A_{nswer}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미리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싶다는 작성자의 의향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연명의료에 관한 의향(뜻)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구체적 시술을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다시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참고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 시 선택되는 연명의료의 종류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향후 작성자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면 담당의사가 다시 확인할 것입니다.

Q 38

장애가 있는 분께서 보호자와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러 오셨습니다. 작성자와는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작성자 본인의 의향을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동행한 보호자는 작성자가 의향이 있다고 했으니 본인이 대신 작성하겠다고 등록을 해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n s w e r

작성자의 의사능력에 영향을 주는 장애가 아니라 시각장애나 그 밖에 작성 등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 등으로 직접 작성이 어려운 경우라면, 서식 작성 시 보호자나 상담자 등이 작성자를 도와 성명, 주소 등을 대신 기입 및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때 등록기관 소속 상담자가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하는 것은 작성자 본인의 인지 여부와 작성자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입니다.

따라서 등록기관의 상담자는 작성자와의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작성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39

**지적장애나 경증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들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A_{nswer}

지적장애나 경증 치매환자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여부는 작성자의 구체적인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자가 상담 시 작성자가 설명 사항에 대해 이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인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며, 작성자의 명시적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라면 작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면 작성할 수 없습니다.

Q 40

청각장애인인 경우도 작성이 가능한가요?

A_{answer}

네 그렇습니다.

작성자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거나 전혀 들리지 않는 청력저하 고령자 또는 청각장애인의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한 상담 안내서 글을 짚어가면서 진행하고, 중간중간 이해했는지 확인하며 작성해야 합니다.

상담 시 입모양을 크게하여 천천히 말하면서 설명하거나, 또는 글로 써서 설명 및 안내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수화를 이용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수화 통역 시 통역으로 들은 바를 상담자가 노트에 기록하면서 작성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화로 통역할 동행자가 함께 방문한 경우 작성자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만약 작성자의 가족이 수화 통역을 진행할 경우, 작성자의 의사결정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41

작성자가 시각장애인이거나, 글씨를 모르거나 또는 글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기력이 없는 상태이지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본인의 의향은 명확합니다. 그렇다면 보호자 또는 상담자가 대필 작성이 가능 한가요?

A_{nswer}

서명은 반드시 작성자가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서명을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녹화나 녹취 등을 통해 작성자의 의향을 확인하여 서명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성자가 신체적으로 불편하거나 한글을 모르는 등 글씨를 쓸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녹화나 녹취 등을 통해 작성자 본인의 의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작성자의 기본 정보에 대하여 상담자가 대신 작성이 가능합니다.

상담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지원 시, 반드시 작성자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작성하고자 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Q 4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시 작성자의 서명 대신 녹화나 녹취 등을 통해 서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녹화나 녹취 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A_{answer}

녹화나 녹취로 서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등록기관의 설명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받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
3.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직접 작성했으며,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

Q 4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관련 "수정"과 "변경", "철회"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nswer

수정·변경·철회의 차이

수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 등록 시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의 내용과 다르게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오입력 되는 경우에 오기 사항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ex) 작성일 오기, 등록일 오기, 주소 오기, 전화번호 오기, 호스피스이용계획 표기 오기, 열람허용여부 표기 오기 등

변경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작성자의 의향이 변경 되어 재작성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 호스피스이용계획에 대한 의향 변경, 열람허용여부에 대한 의향 변경

※ 변경 작성 시 의향서 작성 절차와 동일하게 반드시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 후, 상담자를 통해 상담 후 변경 작성 가능함

철회

작성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의향이 바뀌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밝힌 본인의 의사에 대해 취소를 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4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이후, 작성자께서
개명을 하게 되어 이름을 변경해달라고 하십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nswer

등록기관 담당자는 개명을 요청한 작성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작성자가 개명 이후 발급받은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또는 개명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등)를 통해 개명 사실을 직접 확인하여 관리기관으로 개명에 따른 이름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등록기관 담당자는 위에 따른 사항 등을 확인 후 정보시스템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관리에서 “작성자 인적사항 변경요청” 기능으로 담당자 직접 수정을 통해 변경하시면 관리기관에서 확인 후 수정 사항을 승인하여, 수정 반영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 인적사항 변경 신청·관리

- 인적사항 변경 신청 전
 - 등록기관 담당자는 인적사항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인 필요
- 인적사항 변경 신청 가능 권한
 - 서식 등록 및 수정 권한을 부여 받은 계정(등록자)
- 변경 신청이 가능한 인적사항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외국인등록번호	④ 여권번호

Q 45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변경 및 철회는 유선상으로도 가능한가요?

Answer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듯이, 변경 작성하거나 철회 시에도 작성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작성과 동일하게 본인이 직접 등록기관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자를 통한 상담 및 충분한 설명과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을 변경 작성 하거나 또는 철회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단, 철회 신청은 등록기관 재방문이 어려우신 경우 온라인으로도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직접 철회가 가능합니다.

➔ 철회 완료 후, 등록기관 담당자는 등록카드를 직접 폐기하거나 또는 작성자가 직접 폐기할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합니다.

참고

온라인 철회 방법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정보포털(www.lst.go.kr) ⇒ [나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하기] ⇒ 작성자 정보 및 등록 이력 확인 ⇒ [철회 신청] ⇒ '본인 인증' 후 철회
가까운 등록기관 찾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정보포털(www.lst.go.kr) ⇒ 등록기관 지역찾기 ⇒ 등록기관 검색

Q 46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변경이나 철회는 꼭 기존에 작성 했던 등록기관으로 방문해야 하나요?

A_{answer}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을 방문 하시면 변경 작성 및 철회가 가능합니다.

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절차와 동일하게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 확인과 함께 상담자와의 상담과 설명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변경 작성 또는 철회 시에도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단, 철회 신청은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으로도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직접 철회가 가능합니다.

참고 온라인 철회 방법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정보포털(www.lst.go.kr) ⇒ [나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하기] ⇒ 작성자 정보 및 등록 이력 확인 ⇒ [철회 신청] ⇒ '본인 인증' 후 철회

Q 47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전화번호를 잘못 기입 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확인 문자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후 담당자가 작성자의 전화번호를 수정하여 등록하면 새로 변경된 번호로 문자를 받을 수 있나요?

A_{nswer}

네 그렇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전화번호(휴대폰번호)를 잘못 기입 하였거나 또는 담당자가 의향서 등록 시 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수정한 번호로 문자를 재발송 할 수 있습니다.

단, 전화번호(휴대폰번호)를 수정 한 후 문자 재발송을 원하는 경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1855-0075)로 문자 재발송을 요청해주셔야 재발송이 가능합니다.



등록카드 발급

Q 48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 시에는 카드 발급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다시 찾아오셔서 카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각 등록기관에서 발급신청이 가능 한가요?

A^{ns}wer

네 가능합니다.

등록카드 발급에 대한 의사가 변경되어 발급을 원하시면 해당 등록기관 담당자께서는 작성자의 등록카드 배송 주소를 확인하신 후 등록카드 발급 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등록카드 발급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1855-0075)로 문의 주시면 발급 처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참고 등록카드 발급 신청 방법(2가지 방법 중 택1)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intra.lst.go.kr) 로그인

- 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관리] ⇒ ‘대상자 검색’ ⇒ ‘등록카드 신청 현황’ ⇒ [신청]
- ② 업무메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리’ 클릭 ⇒ ‘등록카드 발급 신청관리’ ⇒ [신청]

※ 신청 시, 반드시 등록카드 배송지 정보 확인 필요!

등록카드 배송지 변경이 필요하다면 ‘우편번호’ 클릭 후 주소 변경 가능

Q 49

발급받은 등록카드를 분실했는데 추후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대한 의사 확인을 위해서는 등록카드 재발급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A_{answer}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카드는 작성자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고, 평소 증명할 수 있는 형태로 소지할 수 있도록 발행하고 있습니다.

등록카드가 없더라도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등록된 의료기관에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intra.lst.go.kr)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여부를 조회 및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intra.lst.go.kr)에 등록된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록증의 발급 여부와 작성하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법적인 효력 여부는 무관합니다.

그러므로 분실하였다고 해서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작성자가 등록카드 재발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등록카드 재발급도 가능합니다.

Q 50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 한 이후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아직 등록카드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_{answer}

‘등록카드 발급 신청 관리’를 통해 등록카드 발급 현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intra.lst.go.kr)에서 등록카드 발급신청 상태가 ‘신청’ 상태라면 등록카드 배송지 주소 수정이 가능하므로 새로운 등록카드 수령지로 배송지 주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등록카드 발급신청 상태가 ‘발급 승인’의 경우 등록카드 주소 수정이 어렵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1855-0075)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Q 5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철회를 신청하신 분이 기존 발급 받으셨던 등록카드를 가지고 오셨는데, 등록기관에서 회수 후 처리할 때 별도의 신고 절차가 있나요?

A_{nswer}

그렇지 않습니다.

등록카드 회수 및 폐기에 따른 별도의 신고 절차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철회가 완료되면 등록기관 담당자는 등록카드를 직접 폐기하시고, 작성자가 등록카드를 미지참하신 경우 직접 폐기할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합니다.

등록카드 폐기 시, 성명과 생년월일이 식별되지 않도록 잘라서 폐기해주시기 바랍니다.

Q 52

**등록 시 실수로 등록카드 발급을 신청 하였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_{nswer}

네 가능합니다.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상 등록카드 발급 신청 상태가 ‘신청’ 상태 인 경우는 등록기관에서 신청취소가 가능합니다.

단, 만약 등록카드 발급을 신청하시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즉시 작성자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등록되었음에 대한 안내와 함께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카드 발송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등록카드 발급 취소 방법**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intra.lst.go.kr) 로그인

- 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관리] ⇒ ‘대상자 검색’ ⇒ ‘등록카드 신청 현황’ 확인 ⇒ [신청 취소]
- ② 업무메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리’ 클릭 ⇒ ‘등록카드 발급 신청관리’ ⇒ ‘의향서 등록번호’ 조회 ⇒ ‘등록카드 신청자 정보’ 확인 ⇒ [신청 취소]

Q 5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신청하신 분께서 모바일 등록증과 등록카드 모두 발급을 원하십니다. 전산에서는 둘 다 발급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_{ns}wer

모바일 등록증을 먼저 선택하여 발급 후 실물 등록카드를 순차적으로 발급 진행하여 주시면 둘 다 발급 가능합니다.

모바일 발급을 선택하여 바로 가는 링크가 신청자분께 모바일 등록증 조회 문자가 발송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등록카드 신청으로 실물 등록카드가 배송될 수 있도록 순차 진행하여 두 가지 모두 발급 가능합니다.

참고 홈페이지를 통한 등록증 확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https://www.lst.go.kr>)에서 “나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하기” 메뉴를 통해 언제든지 본인인증 후 등록증 확인 가능





기록물관리

Q 54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확인할 수 있나요?
확인할 수 있다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nswer

네 가능합니다.

작성자 본인이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

첫째,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기 어렵다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여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정보포털(www.lst.go.kr)에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본인 인증을 통하여 작성된 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 방법

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정보포털(www.lst.go.kr)로 접속

② 정보포털 화면 “주요 링크 바로가기”



나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하기 >

③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휴대폰 본인 인증을 통해 조회

Q 55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환자 사망 전 열람허용 여부에 '열람거부'를 표시하게 되면 임종과정 진입 시 담당의사가 확인할 수 없는 건가요?

A_{nswer}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 내 환자 사망 전 열람허용 여부 체크사항은 환자가 사망하기 전 '가족'에게 열람을 허용할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즉, 열람 거부를 선택했다는 것은 사망 전 작성자의 '가족'의 열람을 거부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성해 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향후 작성자가 임종과정에 진입하는 시점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의 담당의사가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56

작성자의 가족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기록열람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던 기관으로 방문해야만 서식을 열람할 수 있나요?

Answer

그렇지 않습니다.

작성자의 가족은 **별지 제21호 서식 기록열람신청서**와 열람을 요청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환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기록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며 등록되어 통보된 서식은 데이터로 보존되므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정보포털(www.lst.go.kr)에 접속하시어 '기록열람 신청하기 바로가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참고 기록열람 신청하기 방법

- 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정보포털(www.lst.go.kr)로 접속
- ② 정보포털 화면 “주요 링크 바로가기” →



기록열람 신청하기
바로가기 >

- ③ 기록 열람 신청

- ✓ 별지 제21호 서식 기록 열람 신청서 제출
- ✓ 열람을 요청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제출
- ✓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환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Q 57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등록기관 내에서 서식을 보관해야 하는데 얼마동안 보관해야 하나요?

A_nswer

종이 서식으로 작성하고 스캔하여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은 등록기관 내 잠금장치가 설치된 문서보관 설비에 **등록기관이 휴업·폐업 또는 지정 취소 전까지 반드시 영구 보관하여야 합니다.**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Q 58

공동인증서(구 개인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_{nswer}

공동인증서(구 개인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변경된 경우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intra.lst.go.kr) 로그인 화면의 [인증서 변경신청]에서 본인 인증을 통한 계정 정보 조회 후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Q 59

공동인증서(구 개인공인인증서) 대신 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이 가능 한가요?

A_{nswer}

네 가능합니다.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은 개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이 가능하며, 개인 인증서에는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포함됩니다.

금융인증서 사용자의 경우 별도의 인증서 추가 절차 없이 바로 이용 가능합니다.

단, 인증 방법에 있어 두 가지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는 없으므로, 사용자 신청 시 등록한 하나의 방법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등록하신 로그인 방법을 변경하고 싶으신 경우, 로그인 화면에서 [인증서 변경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Q 60

로그인 시 휴면계정으로 분리되어 로그인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휴면계정으로 확인되는 것은 사용자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1년 이상 접속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됩니다.

휴면계정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 인증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담자가 상담 활동을 계속 수행하고 있었으나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을 하지 않아 휴면계정이 된 경우라면 본인 인증 확인 절차 이후 휴면계정을 해제하여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단, 상담자가 6개월 이상 상담 활동을 수행한 이력이 없다면 등록기관 종사자 대상 기본교육을 재 이수한 이후 상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담자를 관리하도록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Q 61

스마트폰으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A_{nswer}

그렇지 않습니다.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직접입력하고 작성·등록하는 방법은 가능하나 스마트폰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직접 작성 및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 PC를 통해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서식을 작성 및 등록하는 경우, 스마트폰에 서명 앱을 설치하여 서명 패드로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직접입력하는 방식으로는 태블릿 PC를 통하여 직접 작성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참고 서명앱 사용방법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intra.lst.go.kr)에 로그인 후 왼쪽 하단 “매뉴얼 다운로드”를 통해 서명 앱 사용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신청

Q 6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종사자대상 기본교육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수강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종사자대상 기본교육

등록기관 기본 교육은 등록기관의 관리자(담당자)를 통해서만 일괄 신청이 가능하며 수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별 수강자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기관 사용자 신청
2. “등록기관 사용자 신청”이 완료된 상담자에 대하여 각 등록기관 관리자가 확인 후 “등록기관 승인”
3. 등록기관 관리자(담당자)가 “등록기관 종사자대상 기본교육” 일괄 신청
4. 개별 수강자는 “등록기관 종사자대상 기본교육(오프라인 또는 온택트 교육)” 수강

✔ 등록기관 종사자 대상 기본교육(온택트) 수료 유의사항

- ① 출석 확인 : 매 강의 시간 시작과 끝에 출석 체크 클릭
- 매 강의 시 출석체크가 모두 이뤄져야 교육 수료 인정 가능
- ② 수료 요건 : 출석체크 10회 중 9회 이상 충족하고, 교육 수강을 완료한 수강생

Q 63

등록기관 기본교육을 이수하면 수료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수료증은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_nswer

네 가능합니다.

등록기관 기본교육을 이수 후 관리기관을 통해 교육 이수 처리가 완료된 이후 교육포털에서 PDF로 저장하거나 출력이 가능합니다.

참고 수료증 발급 방법

교육 이수 후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intra.lst.go.kr) 로그인 ⇒ “나의 강의실” ⇒ 교육포털(새창) 이동 ⇒ “나의 강의실” ⇒ “수강 이력 조회”에서 해당 이수 교육의 오른쪽에 있는 수료증 출력 버튼을 누르시면 PDF로 저장하시거나 출력 가능합니다.

Q 64

등록기관 내 상담자의 사용자 계정이 기본교육 이수 후에도 "등록기관 승인" 상태라고 확인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사용자 계정이 “등록기관 승인” 상태인 경우는 필수 교육인 “**등록기관 종사자 대상 기본교육**”을 미이수 하였거나, 기본교육 이수 여부가 확인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만약, 등록기관 기본교육을 이수하였음에도 상담자의 권한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교육·정보팀으로 연락주시면 교육이력을 확인하여 담당자 권한 변경을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부 록

부록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법정서식(제6호 서식)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7. 3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등록번호	※ 등록번호는 등록기관에서 부여합니다.		
작성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호스피스 이용	[] 이용 의향이 있음 [] 이용 의향이 없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설명사항 확인	설명 사항	1.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사항 2.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6. 등록기관의 폐업·휴업 및 지정 취소에 따른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확인	[] 위의 사항을 설명 받고 이해했음을 확인합니다.	
환자 사망 전 열람허용 여부	[] 열람 가능 [] 열람 거부 [] 그 밖의 의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및 상담자	기관 명칭	소재지	
	상담자 성명	전화번호	
본인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을 직접 작성했으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작성일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등록일		년	월 일
등록자		(서명 또는 인)	

 뒤쪽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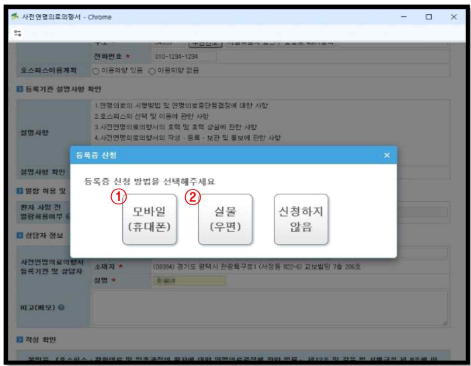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유의사항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하며,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변경하거나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①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②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③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설명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④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등록 후에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경우에는 효력을 잃습니다.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기록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작성자의 의사는 향후 작성자를 진료하게 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이 모두 작성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한 경우에만 이행될 수 있습니다.

부록 2. 모바일등록증 발급 신청 및 방법 안내

1. (등록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완료 시 등록증 신청 방법 선택



① 모바일등록증 링크 발송

등록증 정보	이름	생년월일	1966-06-06
신청자명	이름	등록자명	다사람
세계 등록번호	R25-1412077	등록자명	다사람
세계 등록일	2025-05-14		
휴대폰번호	010-1234-1234		

☐ 확인

② 실물 등록증 신청

등록증 정보	이름	생년월일	1966-06-06
신청자명	이름	등록자명	다사람
세계 등록번호	R25-1412077	등록자명	다사람
세계 등록일	2025-05-14		
주소	(430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		

☐ 확인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완료 시 등록증 신청 방법을 선택하는 팝업이 표출 됨

▶ 모바일등록증, 실물등록증, 신청하지 않음 중 원하는 항목을 선택

2. (등록자) 등록증 발급 신청 정보 확인

사건명명의로의향서 등록관리

사건명명의로의향서 등록관리

등록번호: R25-1412077

카드번호: R25-1412077

배출지정보: ()

상태: 모바일발급

신청



사건명명의로의향서 등록관리

등록번호: R25-1412077

카드번호: R25-1412077

배출지정보: ()

상태: 모바일발급

신청

사건명명의로의향서 등록관리

등록번호: R25-1412077

카드번호: R25-1412077

배출지정보: (04933) 서울특별시 강진구 능동로 400 (중곡동)

상태: 신청

신청취소

사건명명의로의향서 등록관리

등록번호: R25-1412077

카드번호: R25-1412077

배출지정보: (04933) 서울특별시 강진구 능동로 400 (중곡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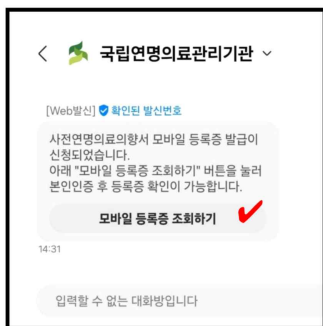
상태: 발급거부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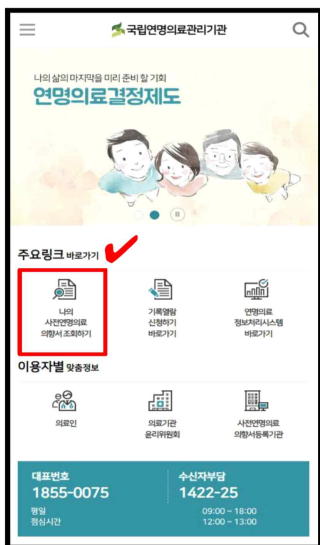
- ▷ 사건명명의로의향서 등록관리 화면 우측에서 “실물” 등록증 발급 정보 확인 가능
- ▷ 모바일등록증 발급을 신청한 경우 상태 영역에 ‘모바일발급’으로 표시되며, 실물 등록증 추가 [신청] 가능
- ▷ 실물 등록증 상태는 신청/발급승인/발급완료 등 기존 등록증 발급 프로세스는 동일함

3. (작성자) 모바일 등록증 조회 화면 접속

휴대폰 문자



정보 포털



- ▷ 모바일 등록증을 신청한 경우 작성자에게 모바일 등록증 조회 문자가 발송됨
- ▷ 문자 내 [모바일 등록증 조회하기] 버튼 클릭 시 조회 화면으로 이동
-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정보포털 내 "나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하기" 버튼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접속 가능

4. (작성자) 모바일 등록증 조회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나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하기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안내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 이용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3조 제1항 제4호

항목(필수)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 후 즉시 파 향서 조회를 위한 기 본인 확인	

① 본인인증

휴대폰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② 실명인증

> 본인인증한 정보와 아래 입력하는 정보가 불일치 할 경우 사
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자정까지 있고, 세자 등록여부 확인 통과후만 사용 후 오
는 정보는 즉시 삭제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취소 확인

③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성명 김진강 (1995.05.14.생)

등록번호 R25-1411929

등록일 2025.02.21.

(소화일 2025.05.14.)

보건복지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등록증 다운로드

서식보기 철회 신청

③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www.lst.go.kr) 등록되었습니다.

의료기관윤리위원의 설치
적용기관 검색 QR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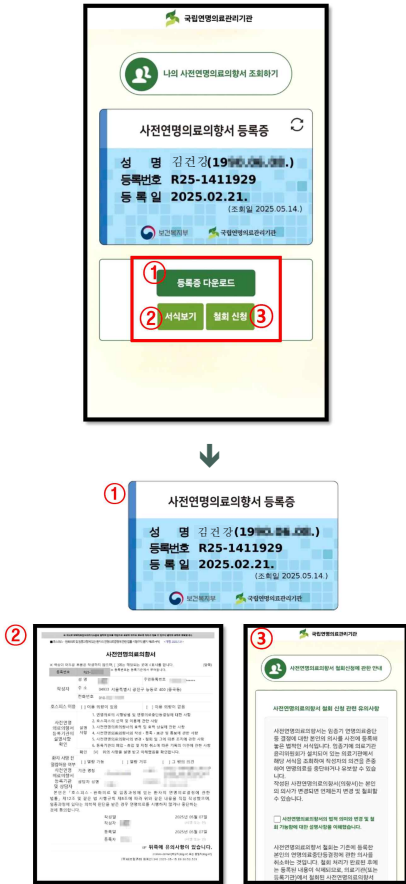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대표번호 1855-0875
수신자무선 1422-358

등록증 다운로드

서식보기 철회 신청

- ▷ 본인인증(①) 및 실명인증 (②)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조회
- ▷ 공동인증서의 경우 PC로 접속 시에만 이용 가능
- ▷ 실물 등록증과 동일하게 앞 뒷면 구성 (③)

5. (작성자) 모바일 등록증 다운로드 및 서식 보기



▷ ① 등록증 이미지 파일 다운로드 가능

▷ ②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 형태 보기

▷ ③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온라인 철회 가능(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인증 필요)

연명의료결정제도 FAQ 등록기관용

발행처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본부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별관 2층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발행일 2025년 8월

편 집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등록기관운영관리팀

전화번호 1855-0075(수신자부담 1422-25)

홈페이지 <https://www.lst.go.kr>

I S B N 979-11-981643-1-5

제작 및 디자인 케이엠커뮤니케이션

© 이 책의 저작권 및 판권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FAQ 등록기관용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https://www.lst.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FAQ

등록기관용



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비대면/무표

13000

9 791198 164315

ISBN 979-11-981643-1-5